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기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3 -
------	--------

발의연월일 : 2013. 11. 15
발 의 자 : 조기원, 조선제, 이성복, 이애숙 의원

1. 개정이유

- 국가명승 제53호로 지정된 수승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무료입장 하계 함으로써 거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객이 부담 없이 다녀 갈 수 있도록 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 용어 제4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함. (안 제4조)
- 나. 관람료 징수 기준을 삭제함. (안 제5조)
- 다. 관람료 징수 방법을 삭제함. (안 제6조)
- 라. 관람료 징수 면제 대상을 삭제함. (안 제8조)
- 마. 그 밖에 별표와 별지의 관람료와 관련된 것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나. 입법예고 : 2013. 11. 19 ~ 11. 23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번지일대(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시설”이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을 말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와 같다.

-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⑤ 그날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날 10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cc 이하)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3.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 (요금표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준용)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와 별지>

별표 1 : 삭제

별표 2 : 보완하여 별표 1로

별표 3 : 별표 2로

별지 1 : 삭제

별지 2, 별지 3, 별지 4 : 별지 1, 별지 2, 별지 3으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승대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u> ----- -----.</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제6호의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생략) <p>제5조(관람료) <u>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u></p> <p>제6조(관람료 징수 등) ① <u>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u></p> <p>② <u>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u></p> <p>③ <u>그 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u></p> <p>④ <u>관람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u></p>	<p><u>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u>」 제67조제1항에 따른 <u>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u> ----- -----.</p> <p>제4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현행과 같음) <p><삭 제></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현행과 같음)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별지 제2호----- .</p> <p>③-----별지 제3호----- .</p> <p>④-----별지 제4호----- .</p> <p>⑤ (생략)</p> <p>⑥-----별표 3----- .</p>	<p>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별지 제1호----- .</p> <p>③-----별지 제2호----- .</p> <p>④-----별지 제3호-----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별표 2----- .</p>
<p>제8조(관람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5. 국가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p>②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 눈썰매장 이용자 및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제10조(요금의 게시) <u>관람료 등의</u> ----- -----.	제10조(요금의 게시) <u>시설이용료의</u> ----- -----.
제11조(위탁징수) ① --- <u>관람료 등의</u> --- -----.	제11조(위탁징수) ① --- <u>시설이용료의</u> - -----.
제12조(수입금의 사용) ①----- <u>관람료</u> <u>등의</u> ----- -----.	제12조(수입금의 사용) ①----- <u>시설이</u> <u>용료의</u> ----- -----.
제13조(준용) <u>관람료 등의</u> ----- -----.	제13조(준용) <u>시설이용료의</u> ----- -----.

□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